

2026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2026. 1.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평 생 교 육 과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2026 평생교육과 기본 계획

평생교육과는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학부모 교육참여, 대안교육기관, 온라인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령기 학생과 지역사회주민에게
배움과 성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제1섹터

학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 교육 보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지원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력보완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검정 고시 추진
- 학업중단 청소년 공교육 연계 지원

제2섹터

공유학교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 학생 성장 중심 학부모교육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강화
-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 지역사회 협력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확대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안착 지원

제3섹터

온라인학교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맞춤형 지원
- 창의융합형 교육(지원)청도서관 환경 조성
- 학원 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비영리법인의 자율 책임 운영 지원

목차

2026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1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 교육 보완	1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지원	1
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다.	학력보완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검정고시 추진	4
라.	학업중단 청소년 공교육 연계 지원	5
2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6
가.	학생 성장 중심 학부모교육 강화	6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강화	9
다.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10
라.	지역사회 협력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확대	11
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안착 지원	12
3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14
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맞춤형 지원	14
나.	창의융합형 교육(지원)청도서관 환경 조성	15
다.	학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16
라.	비영리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	18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지원



-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
-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한 기관 운영 투명성·공공성 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총 7기관: 초1, 중1, 고5)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입학자격: 정규 교육과정 기회를 놓친 청소년 및 성인)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력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 근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 지원항목: ①교직원 인건비, ②입학금 및 학습비, ③교재·교구 구입비, ④실험실습비, ⑤환경개선비, ⑥학생건강검진비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기관 운영 역량 강화
 -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주제 선정·운영
 - ※ 초·중·고 교육과정, 디지털 교육혁신 및 체험형 안전교육 등
 - 지방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회계교육
 - 기관의 역량 증진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 및 진급률 제고

2) 기관 운영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

-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한 전문 컨설팅(10~11월)

분야	회계/기타	인사/복무	장학지도	생활지도	정보보안	시설안전
점검 내용	보조금운용 예·결산 재산관리 등	교원자격 인사·복무 채용관리 등	학사관리 교육과정 교무학사	학생인권 생활지도	학교전산망 정보보안 기록물보안	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협업 부서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정보화담당관	학교안전과

-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2027.4월)

- (평가항목: 3개 분야, 10개 항목) 사업계획(20점), 정산기일 준수 및 집행 투명성 등 사업관리(40점), 성과목표 달성 및 실적보고서 등 사업성과(40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기준: 2026.1.1., 단위: 학급, 명]

연번	지역	기관명	설립 형태	지정일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학령기	성인	계	교원	직원	계	
1	시흥	진영초	개인	2008.02.11.	6	-	208	208	7	2	9	
2	부천	진영중	법인	1998.11.20.	11	-	443	443	13	2	15	
3	수원	계명고	개인	1986.01.22.	10	134	187	321	15	2	17	
4	안양	안양상업고	개인	1986.01.22.	8	29	173	202	14	3	17	
5	부천	진영고	법인	1986.01.22.	20	141	606	747	33	4	37	
6	부천	부천실업고	개인	1997.11.07.	6	70	-	70	13	2	15	
7	고양	고양송암고	법인	1988.12.01.	6	47	179	226	11	2	13	
계					67	421	1,796	2,217	106	17	12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지원 시기																										
교직원 인건비	1인당 월 262만원 내외(육아휴직 수당, 대체인력인건비 포함) ※ 2025년 대비 1인당 15만원 인상	분기별																										
입학금 및 학습비	학교급별 연간 지원단가 (단위: 원) <table><tr><th>급별</th><th>입학금</th><th>수업료</th><th>운영지원비</th><th>교과서비</th></tr><tr><td>초</td><td>14,000</td><td>1,159,200</td><td></td><td>-</td></tr><tr><td>중</td><td>14,000</td><td>1,159,200</td><td>297,960</td><td>-</td></tr><tr><td rowspan="2">고</td><td>2학기제</td><td>16,100</td><td>1,440,240</td><td>458,400</td><td>실비</td></tr><tr><td>3학기제</td><td>16,100</td><td>2,160,360</td><td>565,200</td><td>실비</td></tr></table>	급별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초	14,000	1,159,200		-	중	14,000	1,159,200	297,960	-	고	2학기제	16,100	1,440,240	458,400	실비	3학기제	16,100	2,160,360	565,200	실비	분기별
급별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초	14,000	1,159,200		-																								
중	14,000	1,159,200	297,960	-																								
고	2학기제	16,100	1,440,240	458,400	실비																							
	3학기제	16,100	2,160,360	565,200	실비																							
교재·교구 구입비	(초·중·고) 교당 2,000만원 (고등학교) 학급당 180만원	4월																										
실험실습비	(특성화고 형태 고등학교 4교) 학급당 지원단가 적용 ※ 가사(197만 5천원), 상업(45만 6천원), 공업(144만 3천원)	4월																										
환경개선비	- 법인 운영교(3교) 교당 2,550만원 - 사인 운영교(4교) 교당 1,275만원	6월																										
학생 건강검진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학생 1인당 지원 ※ 2026년도 학생건강검진비 단가 적용	4월, 10월																										

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과 기초생활 능력 향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

1) 수요자 중심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지정 절차		
평생교육과	운영 희망 기관	교육지원청(교육장)
2026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 심사계획 수립	지정 신청서 제출 (접수처: 교육지원청)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운영기관 지정 (서면심사/현장심사/총괄심사)
2025.11월	2025.12월	2026.1월

※ (2025년도 실적) 78기관, 174학급(초등과정 47기관, 100학급/중학과정 31기관, 74학급)

2) 문해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항목	내용	지원 시기
졸업행사비	• 프로그램 학력이수자 1인당 55,000원	1~2월
신규 기관 현판 제작	• 기관당 200,000원	3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설치·운영학급: 공립학교) 학급당 연간 1,500만원 • (지정학급: 민간 운영기관) 학급당 연간 1,000만원 내외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예산 미지원	4월

※ (지원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3) 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및 평가

- 설치·지정년도부터 3년간 운영(2026.3월~2029.2월)
 - ※ 성인(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초·중학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시간 등을 이수하면 학력인정(초등과정, 중학과정 각각 3단계 운영)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컨설팅(2026.6~12월)
- 운영기관 평가를 통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2027.1~4월)
 - ※ 교육지원청 자체점검반(3~5명) 운영, 서면·현장평가 병행
 - ※ (평가항목) 예산편성·집행 적절성, 학습자관리, 수요자만족도, 안전한 교육환경 등

〈202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준: 2026.1.1., 단위: 개, 급]

구분	초등학교 과정(A)		중학교 과정(B)		계(A+B)	
	기관	학급	기관	학급	기관	학급
설치학급(공립학교)	2	3	1	1	3	4
지정학급(지자체 및 민간기관)	46	99	33	78	79	177
계	48	102	34	79	82	181

다 학력보완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검정고시 추진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에게 시험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 기회 제공

1) 지원자 맞춤형 접수환경 구축

- (접수방법 이원화) 현장 접수(25개 교육지원청) 및 온라인 접수 병행으로 지원자 편의 증진
- (제출서류 개선) 기존에 혼용되던 최종학력증명서를 지원자 학적에 따라 3종*으로 분리하여 발급 편의성 제고

* ❶ 졸업(졸업예정)증명서, ❷ 제적(면제)증명서, ❸ 정원외관리증명서

2) 안정적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시험장교 순환운영제(순번제) 시행

- (대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공립 중·고등학교
 - 유형: 병설학교, 단성(單性)학교(남/여학교), 특목고 제외
 - 규모: 학급수 15학급 이상 학교
 - 접근성: 위치 및 대중교통 편의성 충족 학교
- (방법) 대상교 중 추첨을 통해 3개년(2025~27) 순번 사전 선정
- (성과) 시험 관계자(지원자-학교-교육청) 모두가 만족하는 시험장교 운영
 - 지원자: 접근성 및 시설 요건을 고려한 시험장교 선정으로 응시환경 표준화
 - 학교: 시험장교 지정 시기를 예측하여 학사 일정 운영 및 사전 준비 가능
 - 교육(지원)청: 시험장교 지정 업무절차 효율화를 통한 행정력 경감

3) 무결점 성적 처리 및 민원 관리

- (성적 처리) 오차 없는 정확한 채점을 위해 수기 및 전산 채점 병행 실시
- (민원 관리) 합격·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관리 및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지원

※ 2026년도 검정고시 시행 일정

구분		제1회	제2회
공고		2월 초	6월 초
원서접수	현장	2월 중(5일)	6월 중(5일)
	온라인	2월 중(4일)	6월 중(4일)
시험일		4월 초	8월 초
합격자 발표		5월 초	8월 말

라 학업중단 청소년 공교육 연계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인정 사업을 통한 학습 복귀 지원

꿈이음

- 꿈이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중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습 희망자에게 학교 밖에서 스스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운영

- 24세 이하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대상
- 학력인정 평가 및 학력인정 심의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 학력인정(초졸·중졸)
 - 학력인정 기준(초: 4,692시수, 중: 2,652시수)
 -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학습지원 프로그램+학교 밖 학습경험 이수 시간 누적 평가
- 운영 과정 및 주요 일정(연 2회)

운영 과정

대상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미입학) 및 학업중단 학생(정원 외 학적관리) 중 참여 희망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기타
학습경험

2026. 3~

- 교육감 직접 개설 학습지원 프로그램
 -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 교육감 위탁 지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고양, 과천, 광주, 안산, 안양, 여주, 의정부, 파주)
-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 (초) 꿈이음 EBS 온라인 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 학교 밖 학습 체험(검정고시 과목 합격, 자격증 취득 등)

학력인정 평가
2026. 5월, 10월

- 한국교육개발원 학력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습이수기간 및 시수 충족 확인

학력인정 심의
2026. 5월, 10월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

2)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경기도교육감 학력인정 현황

[기준: 2026.1.1.,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초졸 인정	-	-	-	1	4	6	4	79명
중졸 인정	3	6	8	7	11	12	17	
소 계	3	6	8	8	15	18	21	

가 학생 성장 중심 학부모교육 강화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이해 및 가정의 교육 기능 강화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를 통한 학부모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1) 현장 기반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 추진

가)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 협의체 운영

- 새로운 교육환경을 반영한 현장성 있는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학부모 정책 및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환류의 성과 관리

구분	구성	내용
경기도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학부모교육 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	•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자문
학부모 정책참여 지원단	교원 및 학부모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진단·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보고회 운영 • 학부모교육 정책 토론회 운영(연구활동 보고회 연계)
학부모교육 수행기관 협의회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 학부모교육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및 방향 검토 • 학부모교육 수행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 및 학부모교육 현안 협의

나)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 환류체계 내실화

- 교육정책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정책 추진 성과 진단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목적: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소통 및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단위학교 학부모회
학부모 지원 교사자문단 운영	• 목적: 실천 중심 학교 학부모회 정책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확대 • 내용: 교육부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사업 연계 운영
경기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운영	• 목적: 교육정책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시기: 2026.3월~ 2027.2월 • 내용: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정책 모니터링, 학부모 대상 행사 참석 등
경기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	• 목적: 정책 추진 성과 진단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상: 경기 관내 학부모 • 내용: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2026.10월)

2) 맞춤형 학부모교육 및 상담 강화

가) 수요자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내실화

구분	내용
경기학부모배움과정 개발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과정(기본-전문-특색) 구체화 - 학부모교육과정개발TF 구성 및 운영(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 등) - 학부모교육 만족도조사 표준안 개발 및 분야별 인력풀 확보 등
지역특색 학부모교육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학부모정책스피커단 연계 교육 등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자녀지도 역량개발 교육(자녀관계/소통, 학습/진로, 디지털/미디어 등), 학부모 자기성장교육, 학부모아카데미 등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경기교육 주요 정책, 교육 정책의 변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학부모교육	- 학부모교육 취약계층(조손, 다문화, 특수교육, 맞벌이 등) 대상 맞춤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행기관협의회, 직속기관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서관 연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새내기 학부모 독서 아카데미,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 동일한 주제의 학부모교육-학생체험교육 병행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나) 단위학교 학부모교육 지원 기반 조성

- 학교중심 학부모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및 학교 업무 경감
-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교육 정보 제공, 학교생활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

구분		대상	배포시기(예정)	비고
학부모 교육자료	새학기 학부모교육자료	유·초·중·고 학부모	2026. 12월	자료집(한글) 4종 강의자료(PPT) 4종
	신입생 학부모 가이드북	유·초·중·고 신입생 학부모	2026. 12월	자료집(웹진) 4종

다) 학부모 상담 기능 강화

-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 및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구분	대상	시기	내용
개별 맞춤형 상담	희망 학부모	2026. 1~12월	- 성장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 - 학부모 교육참여 등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희망 학부모	2026. 4~12월	- 성장단계별·주제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가족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학부모상담 업무담당자 연수	학부모상담 업무담당자	2026. 상하반기(2회)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참여 업무담당자 상담역량 강화

3) 학부모 소통·협력 시스템 구축

가) 학교-학부모 간 협력적 관계 증진

- 학생의 성장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공동 교육파트너로 기능

구분	대상	시기	내용
학부모 정책 스피커단	희망 학부모	2026. 4~12월	• 경기교육정책을 학부모가 배우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학부모 주도형 정책 확산 시스템
교육공동체 소통리더 직무연수	교원	2026. 상반기	• 교육공동체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소통 역량 강화 연수 • 이해와 공감, 소통 기술, 갈등 관리, 실천 나눔 등 구성

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 학교 운영 정책 결정의 자율성·투명성 강화 및 학교자치 체계 기틀 마련

구분	내용
연수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및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제고 연수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및 심의 관련 기본 해설부터 토론, 실습, 갈등 해소방안 등 운영위원 대상 연수 추진 • 지역별 운영위원 연수 모니터링 실시 및 연수 지원 방안 모색
컨설팅	• 신설교, 소규모학교, 요청교,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 필요교 • 운영위원회 규정 및 학교법인 정관 검토,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적정성 확인,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기한·공개사항 등 확인
업무편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핸드북	•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안건별 심의사항 사례 등

다) 자율과 책임 기반의 학교 학부모회 내실화

-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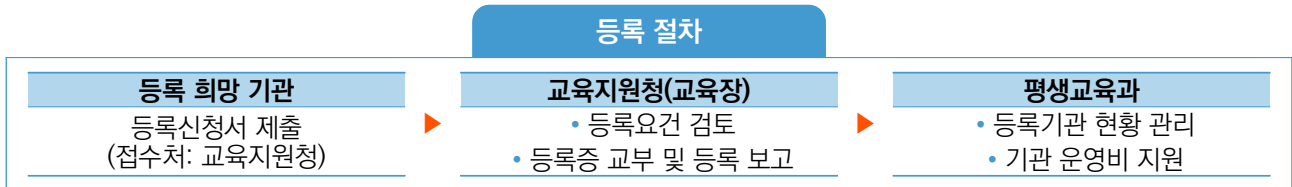
구분	내용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회 임원 • 학부모회 운영 도움자료 활용법 안내 • 학교 학부모회 운영 방법 안내 •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공유 • 학부모 역할 인식 전환 교육
	학부모회 담당교사 • 학부모 정책 안내 • 학부모회 구성 절차 안내 • 학부모회 규정 개정 등 운영 안내
학부모회 컨설팅	신설교 및 신청교 • 학교 학부모회 구성·운영의 어려움 지원 • 학교 사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반 강화



-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 교육 취약계층인 성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지원

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록



2)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31시설)
 - ※ (지원요건) 등록 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예산: 2,574,000천원(기관당 80,000천원~88,000천원)
- 지원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지원액	지원시기
균등 지원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 기본급,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 회계 및 행정업무 담당 인력 인건비만 지원	3,200만원	1월, 7월 (상하반기 2회 교부)
	시설 임차료 • 시설 임차료 ※ 임차계약서 확인(기준일: 2026. 1. 1.)	2,400만원	
	시설 운영비 •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사무용품비, 교육정보화 기자재 임대료, 평생학습 발표회 운영비 등	2,400만원	
	계	8,000만원	
추가 지원 (해당 시설)	시설 임차료 • 연간 임차료 2,400만원 초과 ~ 3,000만원 미만	200만원	1월, 7월 (상하반기 2회 교부)
	• 연간 임차료 3,000만원 이상	400만원	
	시설 운영비 • 임대 전용 연면적 200㎡ 초과 ~ 300㎡ 미만	200만원	
	• 임대 전용 연면적 300㎡ 이상	400만원	

3) 시설 운영 책무성 강화

- 점검·컨설팅: 교육지원청 주관 매년 2회(6월, 12월) 실시
 - ※ (도교육청 합동점검) 격년(기관별 2년 주기)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점검
- 사업평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2027.4월)

〈시·군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기준: 2026.1.1.]

연번	지역	시설수	연번	지역	시설수	연번	지역	시설수	연번	지역	시설수
1	수원	7	5	평택	1	9	이천	1	13	동두천양주	1
2	성남	2	6	여주	1	10	용인	7	14	고양	2
3	안양과천	1	7	화성오산	2	11	김포	2	15	포천	2
4	안산	1	8	양평	1	12	의정부	1		합계	32

※ 10개 지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없음(부천, 광명, 군포의왕, 광주하남, 안성, 시흥,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가평)

다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 지정 평생학습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

1)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사회 구축

- 지정기간: 2026~2027년(2년 단위 지정)
- 지정방법
 - 지정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희망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추천
 - 추천기관 중 도교육청 자체심사를 통한 56기관 지정(교육(지원)청도서관 포함)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56기관
 - ※ (56기관) 교육(지원)청도서관 8기관 + 평생교육기관 48기관(예정)
- 지원예산: 385,000천원
- 지원금액: 기관당 6,000천원~8,000천원
- 지원내용: 강사료(강사수당, 원고료), 프로그램 운영비(사무용품 구입비, 자료인쇄비, 유인물·현수막 제작비, 임차 용역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여행자보험료, 매식비 등)

3)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 강화

- 강화내용: 학부모(예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대상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대상: 학부모, 장애학생 가족,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 연수실시: 평생학습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 지도·점검: 사업계획, 기관 현황 변경 관리(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11월)
- 사업평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2027.4월)

라 지역사회 협력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확대



-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 보장
- 지역독서생태계 안착으로 학생의 독서 기반 성장역량 확대

1)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특화 모델 정립

- (개요) 지역특성과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독서기반 프로그램 운영
- (구성) 사전절차(독서, 인증) + 6차시(북토크) + 6차시 이상(독후 활동) 포맷
- (이수단위) 12차시 이상(프로그램당 80% 이상 출석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운영 흐름도)



2)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운영 확대 및 활성화

-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학교 지원예산 적극 확보
- 2026년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운영 프로그램 확대 및 질 제고 노력
- 교육(지원)청도서관 공유학교 자체 브랜드 “독(讀), 토크(talk) 공유학교” 홍보 강화 및 활성화

3)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독서생태계 확장

기관명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역할 · 기능	• 운영계획 수립 • 경기도 협력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지자체 협력 • 지역자원 협력 • 정보·자원 공유 • 협력사업 홍보	• 교육과정 연계 지원사례 공유 • 협업프로그램 공동 운영	• 학교 독서활동 지원 • 학생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 독서프로그램 수요조사 등

- 교육(지원)청도서관 부재 지역에 대한 독서 편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 독서환경 조성
- 교육지원청 주관 시·군별 협의체 자율적 구성 및 운영
- 지역내 교육협력 기관 및 단체의 지속적 발굴 및 확장 지원

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안착 지원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및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대안교육기관(총 73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대안교육기관법 제22조에 따라 '학교' 명칭 사용 가능 (예)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 ※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경우 취학의무 유예 가능

1)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에 따른 등록 고시 및 등록제 추진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대상
- 학업중단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교육감 등록을 통한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확보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절차 및 주요 일정(년2회)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

등록 희망 기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등록서류 제출 (접수처: 평생교육과)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및 교육감 고시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장 방문 심사 • 등록운영위원회 개최	• 등록대안교육기관 관리 • 운영비 지원 • 지도, 감독, 컨설팅
2026. 4월, 8월	2026. 4~5월, 8~9월	2026. 5~12월

순	내용	운영 시기
1	•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3~4월, 8~9월
2	•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4월, 9월
3	•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 건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4~5월, 8~9월
4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5월, 8월
5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5월, 8월
6	•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	5~12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운영

[기준: 2026.1.1.]

기관 수	교직원	학생	지원사업비	지원내용
73개	1,200명	6,000명	총 44억 7천만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안전교육, 도서 구입, 급식비 등

- 대안교육 프로그램비(도서구입비 포함), 안전공제회비, 학습준비물 등 기관운영경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
- 보조금 보탬e 시스템 활용 예산 투명성 확대 지원
- 주요 일정

순	내용	시기	담당
1	• 신청 안내	3월	도교육청 홈페이지
2	• 신청서 접수	3월	신청기관 → 도교육청
3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대안교육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3~4월	도교육청
4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결과 안내	4월	도교육청
5	• 보조금 교부	5월	도교육청 홈페이지
6	•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5~12월	선정기관 → 도교육청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 대안교육기관 교원(대표, 교사) 및 직원(회계)대상 연수 운영
-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활용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연수 과정 안내
-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보(학교 안전, 급식, 교무학사, 행정 분야) 등 공유
-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대상 연수 분야 발굴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 교육적 지원 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 지원

- 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육적 지원 확대
 - 경기공유학교 직접 참여 및 직속기관 연계 안전교육 확대
 - 대안교육기관 및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
- 대안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4개 권역(동·서·남·북)협의체 및 권역 대표자 협의체 운영
- 문서24 시스템 등록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대안교육기관 지도·감독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내실화 지원

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맞춤형 지원



- 교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방송통신 중·고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방송통신중·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1)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지원

- 방송통신중고 운영 정책 연구 및 온라인 수업 운영 전반 지원을 위한 위탁 운영(한국교육개발원, 1,947,768천원)
-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적용을 위해 방송통신중·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 3차년도 개발비 예산 편성(특별교부금, 538,496천원)
- ※ (방송중) 교과 콘텐츠 11종, 442회차 (방송고) 교과 콘텐츠 18종, 512회차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 부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본교에 지원(총액교부사업)

학교명(중)	학급 수	지원액(천원)	학교명(고)	학급 수	지원액(천원)
수원제일중부설방송통신중	6	94,180	수성고부설방송통신고	15	208,340
호원중부설방송통신중	9	113,720	수원여고부설방송통신고	12	171,830
삼평중부설방송통신중	9	113,720	호원고부설방송통신고	15	208,340
광명중부설방송통신중	9	113,720	상동고부설방송통신고	9	135,320
			서현고부설방송통신고	9	135,320
소계	33	435,340	소계	60	859,150

- 겸임 교직원 수당 지급 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금액
교육활동 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	교장	월 250,000원
		교감	월 150,000원
행정업무 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	행정실장	월 120,000원
		지방공무원	월 50,000원
		교육공무원	월 50,000원
강의수당	• 학생 출석수업 시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	교사	시간당 50,000원
원격교육 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 수업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 학습 지도 및 사이버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교사	인당 200원
채점수당	• 성적평가를 위한 교사 채점 담당자에게 지급	교사	인당 100원
학생지도비	•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교사	인당 1,000원

나

창의융합형 교육(지원)청도서관 환경 조성

- 디지털 독서 기반을 통한 정보자료 및 독서문화서비스 다양화
-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정보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지원

1) 경기교육 온라인 독서 플랫폼 활성화

- 경기도교육청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정보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강화
 - 경기도교육청통합전자도서관 전자책 보급 확대로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독서환경 다변화
 -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누리집(학교도서관 '북(BOOK)돋움') 활성화
- ※ 교육(지원)청도서관-학교도서관-교육지원청 협력 온라인 독서활동자료 공유

2) 학생 독서·체험 온·오프라인 복합문화 공간 조성

-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참여형 디지털 체험 및 미디어 창작 활동 공간 조성
- 동아리·보드게임·집중학습 코너 등 학생주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학생 전용 공간 운영
- 노후 교육(지원)청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변모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추진(평택, 광주도서관)

3) 교육(지원)청도서관 운영평가로 우수사례 확산 및 교육공동체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포상 등으로 교육(지원)청도서관 정책 선순환 기대
 - 10개 교육(지원)청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상 2025년도 운영 실적 평가
- ※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문체부장관상 수상: 평택, 포천도서관

4) 교육(지원)청도서관 홍보 강화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지원)청도서관' 홍보 영상 제작(홍보기획관 협력)
- 교육(지원)청도서관 행사·프로그램 통합 홍보자료(웹진) 제작·배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교 밖 독서생태계, 독서 활동 지원 프로그램 홍보
-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블로그, SNS, 업무포털 등 활용

〈교육(지원)청도서관 현황〉

소속	연번	도서관	개관년도	면적(m ²)		소유 현황		비고
				대지	건물	부지	건물	
본청	1	중앙	1970	2,216	2,360	교육청	교육청	
	2	과천	1984	2,995	5,579	과천시	교육청	
	3	성남	1983	6,633	3,825	성남시	성남시	
	4	화성	2006	4,552	2,372	교육청	교육청	
	5	의정부	2006	3,390	2,092	교육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6	평택	1986	2,938	1,497	평택시	교육청	
	7	광주	1990	690	1,192	교육청	교육청	
	8	여주가남	2017	1,841	1,494	여주시	여주시	
	9	포천	1989	1,662	1,418	교육청	교육청	
	10	김포	1985	1,561	1,139	교육청	교육청	

다 학원 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문화 정착 및 자정능력 제고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율적 성장 기반 조성

1) 학원 등 지도·점검

- 목적

- 컨설팅 및 자율 개선 지원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학원 운영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대
- 불법 운영 사전 예방 및 시설·생활안전 강화 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 시기별 점검내용

- 상시·정기점검: 교육지원청 자체 종합 지도점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사안 지도점검 등

구분	대상	주요 점검사항
자체종합 지도 점검	• 최근 1년 이상 미점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규 설립 및 설립자(교습자) 변경 1년 이내 기관	▶ 교습시간 위반 행위 ▶ 선행학습 유발, 거짓·과대 광고 ▶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강사 채용 적정성 ▶ 시설 안전관리 및 기타 학원 법령 준수 여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접수 사안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선행학습 유발, 거짓·과대 광고 ▶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개인과외교습) ▶ 각종 편·불법 학원 등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	• 개인과외교습자 중 희망자 범위 내 교육지원청 자율 선정	▶ 교습비 등 표시, 게시, 고지 사항 준수 여부 ▶ 선행학습 유발, 거짓·과대 광고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특별점검: 시기별 사안 점검 및 유관기관(교육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합동점검

시기	대상	주요 점검사항
1~2월	기숙학원, 다중이용업소 학원	▶ 화재예방 안전장치 및 시설 점검
5~9월	집단급식소 신고 학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 점검
4~9월	NEIS 학원 민원 서비스 공개항목	▶ 학원 및 교습소 공개항목(강사 수, 교습비등) 정확성 여부 점검
7~8월, 12~2월	방학 중 학습 캠프	▶ 불법 운영(미등록) 학습 캠프 ▶ 영어캠프, 의대입시반 운영 적정성 점검
8~11월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학원	▶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결과 통보 시	부당 표시 광고 적발 학원	▶ 선행학습 유발, 거짓·과대 광고 ▶ 미등록 교습, 중요사항 표시 위반

2) 학원, 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 강사 연수

- 목적: 민간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학원 운영 역량 향상
-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제21조제3항
- 시기 및 대상: 2026.1~8월, 약 4만명 대상
- 연수내용: 학원법 및 학원 운영 준수사항, 법정 의무교육, 안전교육 등

- 운영방안: 나라장터를 활용한 온라인연수 서버 구축·운영 업체 입찰 계약, 사업비 집행지침 연수, 공인회계사 사업비 집행 검토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3) 학원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구분	내용	시기
학원업무 담당자 협의회	• 학원 관련 주요 정책 및 업무 공유 •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개선 방안 논의 • 지역별 현안사항 토론	연 2회
신규 담당자 직무연수	• 학원담당 주요업무 안내·공유 • 학원, 교습소 등 설립 및 변경 등록업무 절차 등 실무교육	

4)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활성화

- 목적: 학원, 교습소 등의 자율 개선환경 조성으로 운영의 건전성 도모
- 구성: 교육지원청별 구성·운영
 -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촉(5명 이상 20명 이하)
- 역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지도, 신규 설립·운영자에 대한 운영 컨설팅 및 멘토 역할 수행
- 활성화 방안
 - 연간 교육지원청별 36회 이상 운영
 - 교육지원청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컨설팅 및 연수 운영

5)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 목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 근절, 운영 건전성 강화
- 신고포상 내용 및 금액

위반항목	대상	교습과목	포상금
교습비등 초과징수 및 허위표시·게시·고지	학원·교습소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1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전 과목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1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미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2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전 과목	월 교습료의 50% (500만원한도)

〈학원 등 현황〉

[기준: 2026.1.1., 단위: 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합 계
27,149	11,429	56,988	95,566

라 비영리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



- 법인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향상
- 법인과 주무관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

1) 법인 관리·감독

- 관리 유형 지정 및 관리·감독

유형	운영 형태	관리·감독 방안	관리 주체
일반 관리	• 정상 운영	▶ 자체 점검(서면)으로 같음하며, 미흡 운영 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하도록 지도 ▶ 자체 점검 결과, 부적정 사항에 대해 필요시 현장 지도·점검 실시	교육지원청
중점 관리	• 부적정·부실 운영	▶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의무 실시	교육지원청
특별 관리	• 무실적 법인 • 지역 현안 법인 (공동 관리 필요)	▶ 현안 법인에 대한 이력 관리 철저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간 현안 공유·협의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지도·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공동 관리

- 법인 운영 자체점검 및 맞춤형 지원

- (법인)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법인 자율 운영과 개선 능력 함양
- (교육지원청) 법인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인별 지도·점검 방향 설정 및 맞춤형 지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법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자체점검 안내 (2월)	▶ 법인 운영 자체점검 (미흡사항 자율 개선) (2~3월)	▶ 법인 관리 유형 지정 및 지도·점검 방향 설정 (4월)	▶ 맞춤형 지원 (유형별 관리·감독) (4~12월)

- 법인 및 교육지원청 컨설팅

구분	내용
대상	• 348개 법인 및 25개 교육지원청(교육지원센터 포함)
시기	• 4~12월
방법	• 법인 또는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요청
내용	• 법인 인·허가, 예·결산, 지도·점검 등 교육지원청 법인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 법인 현안 문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 법인 운영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청취

2) 교육지원청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 담당자 협의회 및 직무연수

구분	내용	시기
담당자 협의회	• 법인 운영·관리 주요사항 및 일정 등 안내 • 지역별 현안사항, 주요 운영사례, 법인 애로·건의사항 등 논의	연 2회 (2월, 8월)
신규 담당자 직무연수	• 교육지원청 신규 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인 기초 직무연수 실시	

- 법인업무 처리 기준 및 절차 현행화, 법령 개정 반영 등 업무편람 정비
- 교육지원청별 지도·점검 사례 분석 및 공유

〈비영리법인 현황〉

[기준일: 2026.1.1, 단위: 개, %]

공익법인 ¹⁾							비영리법인 ²⁾			합계
재단 ³⁾			사단 ⁴⁾			계	재단	사단	계	
장학	학술·기타	소계	장학	학술·기타	소계		학술·기타	장학·학술 ·기타		
246 (70.7)	7 (2.0)	253 (72.7)	14 (4.0)	9 (2.6)	23 (6.6)	276 (79.3)	5 (1.4)	67 (19.3)	72 (20.7)	348 (100.0)

1) 공익법인: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설립된 법인
2) 비영리법인: 「민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설립된 법인
3) 재단법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구성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26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2026. 1.